

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치협, 국민과 함께하는 치협



# 대한치과의사협회

수신자 : 수신처 참조

참 조 : 보수교육 담당자

제 목 : 2017년도 회원 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초록 제출 협조 요청

---

1.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협회에서는 의료법 제30조(협조 의무) 제2항과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 (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) 및 협회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, 연자 자격을 갖춘 회원이 보수교육 강연 연제 신청을 하고 협회에서 합당한 교육을 검토하여 연제정보를 각 보수교육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.

3. 귀 기관의 기존 연자를 비롯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이 아래의 강사자격과 불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1인당 3개 이내의 연제와 강연초록을 오는 2016.11.04(금)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,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* 불임 : 1) 회원보수교육 강사자격 및 연제 제출 요령 1부.  
2) 관련 공고 1부. 끝.

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 남 설



수신자 : 각 시·도지부장, 각 분과학회장, 각 치과대학(원)장, 각 수련치과병원장

---

대 리 손우영

과 장 홍석민

국 장 김성현

협조자

시 행 학술66, 279 - 690 (2016.10.05)

접 수 ( )

우 04802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

/ <http://www.kda.or.kr>

전화 (02)2024-9150

/ 전송 (02)468-4656

/ [scientific@chol.com](mailto:scientific@chol.com)

/ 공개

붙임 1)

## 회원 보수교육 강사 자격 및 연제 제출 요령

### 1. 회원 보수교육 강사 자격

#### 가. 치과의사 회원보수교육 강사자격을 충족하는 자

협회 정관 제9조(회원의 의무)를 준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

- 1)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
- 2)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전공의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자
- 3) 치과대학,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강사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
- 4) 개원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연제와 관련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관련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
- 5) 기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하는 자

=> 각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조건에 충족되는 자(조건 미 충족 시 승인 불가)

#### 나.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한 자

##### 1) 협회 정관 제9조(회원의 의무)

①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
1. 협회 정관·규정 및 의결사항의 준수 의무
2.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·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의무

② 회원은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
=> 협회 연회비 및 부담금 전액이 납부(2016년도 회비까지 완납)되어야 함

미납 금액은 해당 시·도지부를 통해 납부하면 됨

(문의처: 각 해당 시·도지부 사무처 / 협회 재무팀 TEL.02-2024-9120)

**회원 보수교육 강사 자격 ⇒ 가. 나 항 모두 충족 시 가능**

## 2. 준비서류

- 2017년도 회원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초록

## 3. 제출방법

가. 협회 홈페이지 내 보수교육 센터(<http://edu.kda.or.kr>)를 통하여 직접 신청

나. 강사 1인당 강연 연제는 최대 3개까지 제출

다. 연제신청서 내 각 연제의 강연내용은 200자 이내로 요약해서 제출

라. 연제신청서 내 이력내용은 반드시 3개 이상 교육경력 기재

## 4. 신청 기간

- 2016.10.07(금) ~ 11.04(금)까지(기한 완료 후 신청 불가)

## 5. 신청서 접수방법

가. 회원 보수교육 강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

1) 치과의사 회원보수교육 강사자격을 충족하는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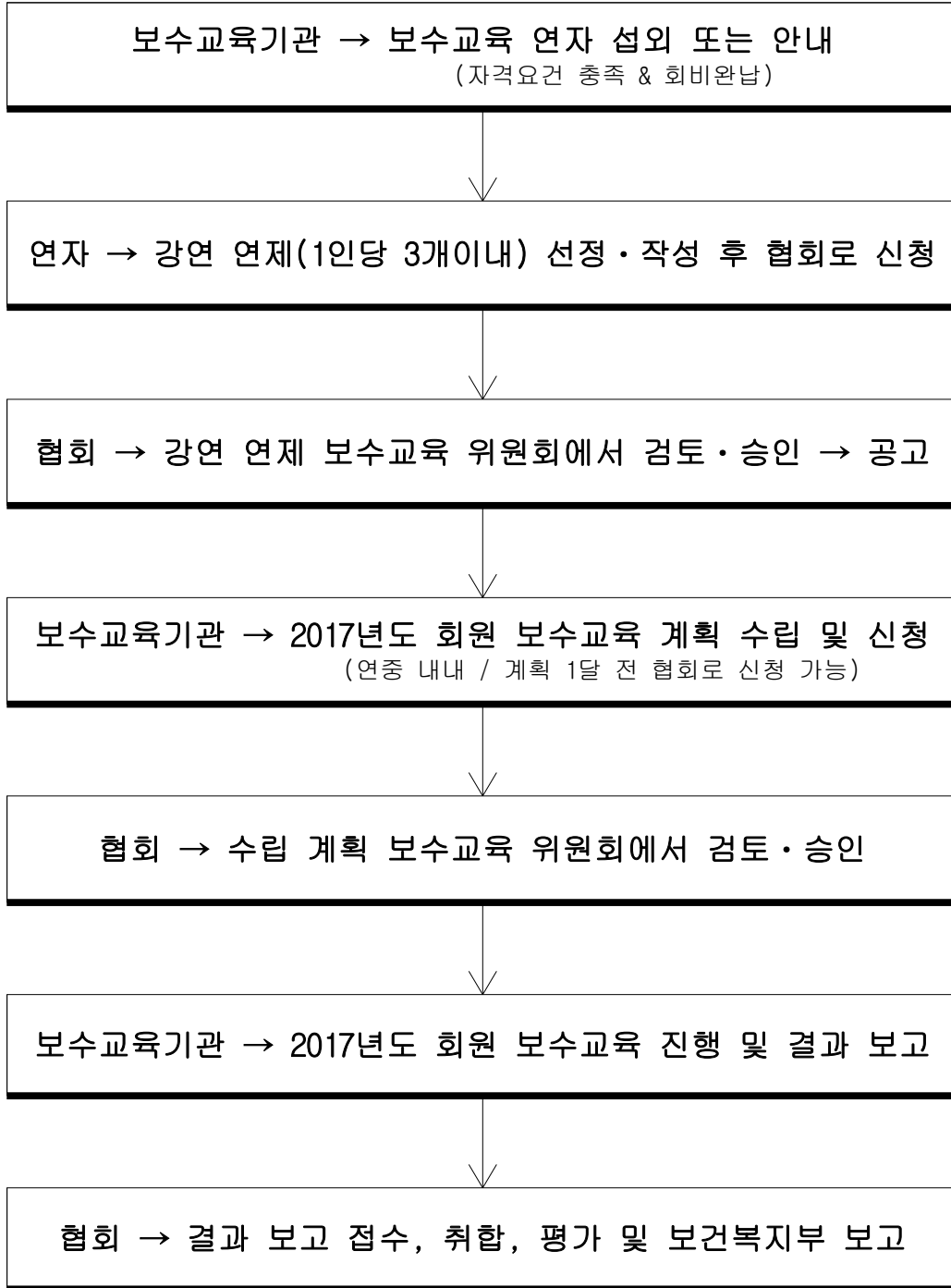
2)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·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다한 자

나. 보수교육센터(<http://edu.kda.or.kr>) 접속 → 로그인 → 보수교육일정 클릭 → 보수교육연제신청 클릭 → 작성

## 6. 문의처

- 학술국 TEL.02-2024-9150

# 2017년도 회원 보수교육 진행 순서



붙임 2)

## 공 고

의료법 제30조 제2항과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협회 회원 보수교육규정에 의거 2017년도 치과의사 회원보수교육 강연연제를 아래와 같이 신청 받아 각 지부, 분과학회, 치과대학 및 수련치과병원, 기타교육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해당회원께서는 2016. 11.04(금)까지 협회 보수교육센터(<http://edu.kda.or.kr>)에 접속하여 강연 연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가. 회원 보수교육 규정

- 1) 협회 정관 제9조(회원의 의무)
  - ①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    1. 협회 정관·규정 및 의결사항의 준수 의무
    2.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·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의무
  - ② 회원은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
### 나. 신청자격

- 협회 정관 제9조(회원의 의무)를 준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
  - 1)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
  - 2)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전공의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자
  - 3) 치과대학,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강사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
  - 4) 개원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연제와 관련 전공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관련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
  - 5) 기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하는 자

### 다. 교육방법

- 1) 강 의
- 2) 슬라이드
- 3) 시청각교육
- 4) 실 습

### 라. 교육내용

- 1) 실제 임상분야
- 2) 최신치의학 정보
- 3) 치과와 관련된 교양강좌 등
- 4) 기초교육과 의료정책 및 의료사회학

### 마. 제출방법

- 가. 협회 홈페이지 내 보수교육센터(<http://edu.kda.or.kr>)를 통하여 직접 신청
- 나. 강사 1인당 강연 연제는 최대 3개까지 제출
- 다. 연제신청서 내 각 연제의 강연내용은 200자 이내로 요약해서 제출
- 라. 연제신청서 내 이력내용은 반드시 3개 이상 교육경력 기재

### 바. 신청 기간

- 2016. 10.07(금) ~ 11.04(금)까지(기한 완료 후 신청 불가)

### 사. 신청서 접수방법

- 가. 회원 보수교육 강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
  - 1) 치과의사 회원보수교육 강사자격을 충족하는 자
  - 2)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·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다한 자
- 나. 보수교육센터(<http://edu.kda.or.kr>) 접속 → 로그인 → 보수교육일정 클릭 → 보수교육연제신청 클릭 → 작성

### 아. 문의처

- 학술국 TEL.02-2024-9150